사 단 법 인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대 한 병 원 협 회

수　신　수신처참조

참　조　보험(원무)부서장

제　목　질병군 고시개정 안내 (2014-239호, 241호)

---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239호, 241호 (2014.12.30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237호, 2014.12.30.),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205호, 2014.11.19.)를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합니다.

붙 임 : 고시 2014-239호 개정문 1부
고시 2014-241호 개정문 1부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수신처

전국병원장

사원 김영진 팀장 노환우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628 (2014.12.30)

우 121-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8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jkim@kha.or.kr